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5. 9.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5년 3월 4일, 소병훈의원 등 11인

나. 회부일자: 2025년 3월 5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5.8.18.)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2025.8.20.) 상정, 의결(수정가결)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2025.8.27.) 상정, 소위심사보고, 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소병훈의원)

암검진 수검자의 사후관리와 암검진의 장기적인 효과평가가 효율적

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암검진 수검률과 암 사망률 통계를 연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를 위해서는 ‘사망원인통계’를 매년 집계하는 통계청의 데이터베이스와 암검진 실시대상, 실시현황 및 수검자의 진료 관련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데이터베이스 연계·관리가 필요한 실정임.

이에 검진자료의 활용과 통계자료 작성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청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정경윤)

현행법상 ‘검진자료’(제3조제4호)란 국가건강검진을 통하여 얻은 개인의 신상정보로서 문진·진찰·의사소견 및 각종 검사결과 등 건강검진에 관한 문서 또는 광·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한 부호·문자·음성 및 영상 등의 자료를 말하는 것으로, 이러한 검진자료는 건강정책 수립 및 이를 위한 통계자료의 작성 등 한정된 사항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음.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청 등을 대상으로 이러한 검진자료의 활용에 필요한 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정부기관 간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연계를 통해 보다 실효적인 국민건강관리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설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임.

특히, 현행법령상 검진자료를 통계자료 작성에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계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나, 그 외 현행법 제18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역사회 건강증진사업, 만성질환 관리 및 지원 사업 등에 필요한 검진자료 수집에는 한계가 있기도 함.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강정보는 민감정보로서, 현행법령상 개인정보가 포함된 검진자료를 활용하려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정안에 따라 정보 주체의 동의가 없더라도 법령에 근거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게 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정보 주체의 권리가 제한되므로 사회적 필요성, 국민 인식 등을 함께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한 의견을 참고할 필요도 있음.

그 외, 개정안을 수용하는 경우 현행법(제22조제1항)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건강검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을 대상으로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는 규정이 이미 있으므로, 입법의 효율성 측면에서 동 규정에 ‘제18조에 따른 검진자료의 활용’을 추가하는 방안도 가능하겠음.

참고로 현행법에서 국가건강검진(제3조제3호)이란 「모자보건법」에 따른 영유아 건강검진, 「암관리법」에 따른 암검진 등을 의미함.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이수진)

현행법에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건강검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을 대상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규정에 ‘검진자료 활용’을 추가하고, 자료 요청은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제공된 자료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규정을 추가하여 수정의결함.

6. 심사결과

수정 가결

7.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내용

약간의 자구 수정이 있었음.

[붙임] 1.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2.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5. 8.

제안자 : 보건복지위원장

수정이유

현행법에 보건복지부장관은 국가건강검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을 대상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검진자료 활용을 위해서도 자료 제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자료 요청은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수집된 자료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규정을 추가함.

수정주요내용

가. 보건복지부장관이 국가건강검진 뿐만 아니라 검진자료의 활용을 위해서도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자료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2조제1항).

나. 보건복지부장관의 자료 요청은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제공받은 자료는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됨을 명시함(안 제22조제3항 신설).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8조제3항을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삭제한다.

안 제22조제1항 중 “국가건강검진”을 각각 “국가건강검진,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진자료의 활용”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 한다)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라 한다)”으로 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료 등을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요청하여야 하며, 제공받은 자료는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제18조(검진자료의 활용) ①·② (생략) <u><신설></u>	제18조(검진자료의 활용) ①·② (현행과 같음) <u>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 한다)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라 한다), 통계청, 「통계법」에 따른 통계작성기관, 그 밖에 국민건강검진 관련 법인·단체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진자료의 활용에 필요한 자</u>	제18조(검진자료의 활용) ①·② (현행과 같음) <u><삭제></u>

	<u>료의 제출이나 의</u> <u>건의 진술 등을 요</u> <u>구할 수 있다. 이</u> <u>경우 자료의 제출</u> <u>을 요구받은 자는</u> <u>특별한 사유가 없</u> <u>으면 이에 따라야</u> <u>한다.</u>	
③·④ (생 략)	④·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 음)
제22조(자료의 협조요 청) ①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가건강검 진을 위하여 필요 한 경우에는 건강 검진을 실시한 의 료인 또는 보건 의 료기관의 장, 「국 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국민 건강보험공단(이하 “국민건강보험공단” 이라 한다) 및 건강 보험심사평가원(이 하 “건강보험심사평 가원”이라 한다)과	제22조(자료의 협조 요청) ① ----- ---- <u>국가건강검진</u> <u>을 위하여 필요한</u> <u>경우</u> ----- ----- ----- ----- <u>국</u> <u>민 건강 보험 공 단</u> <u>및 건강보험심사</u> <u>평가원</u> ----- ----- ----- ----- -----	제22조(자료의 협조 요청) ①----- --- <u>국가건강검진,</u> <u>제18조제1항 및 제</u> <u>2항에 따른 검진자</u> <u>료의 활용을 위하</u> <u>여 필요한 경우</u> -- -----「 <u>국</u> <u>민건강보험법」에</u> <u>따라 설립된 국</u> <u>민 건강 보험 공 단</u> <u>(이하 “국민건강보</u> <u>험공단”이라 한다)</u> <u>및 건강보험심사</u> <u>평가원(이하 “건강</u> <u>보험심사평가원”</u>

그 밖의 관계 행정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u>국가건강 검진</u>에 필요한 자 료의 제출이나 의 견의 진술 등을 요 청할 수 있다. ② (생 략)	----- ----- ----- ----- ----- ----- -----. ② (현행과 같음) <u><신 설></u>	<u>이라 한다</u>)----- ----- -----<u>국가건강 검진,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진자료의 활용</u>- -----. ② (현행과 같음) ③ <u>보건복지부장관 은 제1항에 따른 자 료 등을 목적에 필 요한 최소한의 범위 에서 요청하여야 하 며, 제공받은 자료 는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 는 아니 된다.</u>
---	--	--

건강검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건강검진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중 “국가건강검진”을 각각 “국가건강검진,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진자료의 활용”으로 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료 등을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요청하여야 하며, 제공받은 자료는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2조(자료의 협조요청)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u>국가건강검진</u> 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강검진을 실시한 의료인 또는 보건 의료기관의 장,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 한다)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라 한다)과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u>국가건강검진</u> 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자료의 협조요청) ①----- ----- <u>국가건강검진</u> ,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진자료의 활용----- ----- ----- ----- ----- ----- ----- ----- --- <u>국가건강검진</u> ,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진자료의 활용-----.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신설>	③ <u>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료 등을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요청하여야 하며, 제공받은 자료는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u>